



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
보

1. 관련

ㄱ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, 2017.7.25)

ㄴ. 2017아12006 집행정지 :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결정 (2017.7.31.)

2. 서울행정법원 2017아12006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2017년7월31일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다 음 >

○ 주문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지 5 ‘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’ 가운데 [별지] ‘품목별 상한금액 조정 내역’ 제품명란 기재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2017.8.25.까지 정지한다.

3. 이에 따라 붙임의 별지목록은 2017년 8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. 집행정지 품목 1부. 끝.

